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계/대리/과장	차장/팀장/부차장	부점장/대우	부점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 1 조 거래 조건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합니다.)

대출과목 (대출종류)	()	지 연 배 상 금 률	<input type="checkbox"/>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연 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를 의미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금액	금 원정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이자율은(□일단위, □월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율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월단위는 12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 출 실 행 방 법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출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회전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부터 초기 ()년 동안 거치하고 잔여기간인 ()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초기 ()개월 동안 거치하고 이후 ()개 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중 초기 대출상환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 하여야 하는 대출금부터 상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년 ()개월	이자지급 시기 및 방 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후의 이자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이자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첫번째, □세번째)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 자 율	<input type="checkbox"/> 변동이자율 ■ 3개월 CD유통수익률 + 연 % ■ COFX(자금조달비용지수) + 연 %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 ■ 수신금리 + 연 % ■ + 연 % <input type="checkbox"/> 고정이자율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 %를 적용하고, 대출 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를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초기 고정이자율+잔여기간 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또는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를 적용하고,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 기간은 매 ()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는 U-보급자 리론 금리 + 가산금리 % - 차감금리 %로 변경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우대금리 항목(위 기준금리별 가산금리에 반영됩니다.)	상환상환 수 수 료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이하 "중도상환"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의 경우 약정된 분할상환원금의 상환 및 한도대출로 운용한 대출금 의 상환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년 이내 상환시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대출기간(총일수) ※ 대출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 를 계산합니다. ※ 단,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 3개월 CD유통수익률과 기간별 금융채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고시하는 9일물 CD유통수익률(종가기준)과 기간별 금융채 유통수익률(종가기준)의 대출실행일 직전 10영업일 평균을 적용하고, COFX는 대출실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 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혼합기준을 적용하며, 고정이자율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 변동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고정이자율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합니다.	기타대출 ()
		약정한도 미 사 용 수 수 료	한도거래(퍼스트홀론, 잔금대출, 그룹론)의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일에 이자와 합산하여 대출금에 더해 집니다. 단, 한도사용율이 %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제 2 조 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변동됩니다.

- 3개월CD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고시하는 3개월CD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국고채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3년제와 5년제 보간법을 이용해 결정), 5년제 국고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1년마다 변동됩니다.
-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고액이 담보로 제공되는 본인명의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적용되며, 수신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적용금리도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 당좌대출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 산출하여 고시되는 당좌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되며, 매일 변동됩니다.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변동이자율인 경우 제조 거래 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되고 고정이자율인 경우 이자율변동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COF(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일의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제조 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주기가마다 변동됩니다.
- U-보급자리론 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이자변동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매월 고시하는 해당 월 U-보급자리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조 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됩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제 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5 조 담보·보험

-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시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주택(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포함합니다. 기타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의 준공 즉시 소유권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 등을 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즉시 제공합니다.
- 본인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은행을 위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화재보험 가입을 은행에 위임하며, 최초보험료는 대출실행금액에서 차감하고 보험기일 도래 시에는 자동이체에 의한 보험료 출금을 승인합니다.(최초 보부기간은 ()년, 이후 매 1년마다 갱신)

본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등(은행으로 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하는 주택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그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은행의 승인없이 소유권 이 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본인이 제3항에 따른 담보물 보전사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대출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로 인하여 은행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기간연장

- 약정한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은행의 연기정책에 따라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은행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
 - 연체여신 보유자
 - 감정가액 대비 과다여신 보유자
- 은행은 제항의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상환기일 1개월전까지 본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하며, 본인이 연기요청을 표시한 경우 전화추적(별도 약정서 징구 생략) 또는 소정 양식에서 명달인 후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액 및 이율 등은 은행이 정한 연기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7 조 한도대출거래에 대한 약정

-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가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한도초과지급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약정에 의하여 대출실행계좌에 대해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 또는 현금 자동지급카드 등의 사용이 있는 때에는, 실행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실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은행이 그 결제를 확인한 때까지 이자금에서 제외)을,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이자, 지연배상금,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및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대출취급수수료, 인지세, 담보권의 설정비용, 담보조사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제반비용은 실행계좌에서 자동인출하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범위내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부족으로 인하여 더할 수 없는 금액은 즉시 갚기로 합니다.

제 8 조 가계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본 대출의 만기 도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기에 관한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 연장합니다.
-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 9 조 은행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

-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시 본인의 사정 등으로 담보제공이 지연될 경우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제항에 의한 비용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은 곧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은행의 지급일로부터 본인의 상환일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대출금 수령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 (부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대출금 수령위임의 표시

(단위: 원)

금 액	금 원
대출금수령 계좌번호	금 계좌번호:
	예 금 주: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제 12 조 분양권 전매시의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본인이 주택 등의 분양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서의 본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채권의양도

- 은행은 이 약정에 기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및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
- 본인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근저당권을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더 이상 활용 할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매매·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채권양도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본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이 대출거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4 조 기타 담보권설정

-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를 인도하기로 합니다.
- 제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방정장려금 등을 포함합니다.
- 예금 등이 기간연장·개사·갱신·분할·병합·종액·감액 또는 이자환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도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입니다.
- 은행은 제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위탁자) 수 익 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 기일

제 15 조 근저당권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및 은행의 승낙 절차

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에 신고후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 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다더라도 매도인의 기타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신용상태, 은행의 심사기준,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나 담보부동산 매매 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대출계약 철회

- 본인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하, "철회 기간"이라 합니다)까지 은행에 서명,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본인이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은행은 본인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제항에 따른 철회기간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증가, 연체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정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기타특약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	-----------

■ 대출금 입금, 자동이체 신청 및 무통장·무인감 출금 동의

본인은 아래에 기재된 계좌를 대출금 입금(한도거래의 경우 한도대출계좌) 및 상환(자동이체)계좌로 신청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대출실행일에 본인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관련 비용을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채무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금융기관명 : SC제일은행 • 계좌번호 : _____

■ 자동이체 거래약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1. 자동이체일(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청구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지정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 됩니다.
2.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에서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 합니다.
3. 납입일에 이체대상이 여러건이 있을 경우,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에 따릅니다.
 ※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확인경로: 은행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 예금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4. 자동이체계좌의 지급제한 등으로 출금이 불가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른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의 예금잔액이 이체일 현재 납입할 총액에 미달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7. 본인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래는 다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련예금약관, 신탁약관, 계좌간 자동이체거래약관을 준용 합니다.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1.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자율은 실행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3. 이 약정서 작성 후 주소, 전화번호, 기타 위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귀 은행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 하겠습니다.
4. 이 약정서의 접수가 대출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여부 결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5. 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7.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8.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상당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인)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계/대리/과장	차장/팀장/부차장	부점장/대우	부점장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조 거래 조건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합니다.)

대출과목 (대출종류)	()	지 연 배 상 금 른	<input type="checkbox"/>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연 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를 의미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금액	금 원정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이자율은(□일단위, □월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율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월단위는 12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 출 실 행 방 법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출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회전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부터 초기 ()년 동안 거치하고 잔여기간인 ()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초기 ()개월 동안 거치하고 이후 ()개 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중 초기 대출상환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 하여야 하는 대출금부터 상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년 ()개월	이자지급 시기 및 방 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이자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첫번째, □세번째)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 자 율	<input type="checkbox"/> 변동이자율 ■ 3개월 CD유통수익률 + 연 % ■ COFX(자금조달비용지수) + 연 %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 ■ 수신금리 + 연 % ■ + 연 % <input type="checkbox"/> 고정이자율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 %를 적용하고, 대출 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를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초기 고정이자율+잔여기간 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또는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또는 COFX+ %를 적용하고,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 기간은 매 ()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는 U-보급자 리론 금리 + 가산금리 % - 차감금리 %로 변경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우대금리 항목(위 기준금리별 가산금리에 반영됩니다.)	상 환 수 수 료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이하 "중도상환"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의 경우 약정된 분할상환원금의 상환 및 한도대출로 운용한 대출금 의 상환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년 이내 상환시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대출기간(총일수) ※ 대출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 를 계산합니다. ※ 단,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기타대출 () 퍼스트홀론,잔금대출,그룹론의 경우 매년 대출잔액의 %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매년"이라 함은 대출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째 해당일자(대 출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변동이자율의 변동주기는 제2조 이자율의 변동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 CD유통수익률은 매 3개월마다, COFX는 매 ()개월 마다, 금융채유통수익률은 매 ()년 마다 변동되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이 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 3개월 CD유통수익률과 기간별 금융채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고시하는 9일물 CD유통수익률(종가기준)과 기간별 금융채 유통수익률(종가기준)의 대출실행일 직전 10영업일 평균을 적용하고, COFX는 대출실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 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혼합기준을 적용하며, 고정이자율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 변동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고정이자율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합니다.	약정한도 미 사 용 수 수 료	한도거래(퍼스트홀론, 잔금대출, 그룹론)의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일에 이자와 합산하여 대출금에 더해 집니다. 단, 한도사용율이 %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제 2 조 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변동됩니다.

- 3개월 CD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고시하는 3개월 CD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국고채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3년제와 5년제 보간법을 이용해 결정), 5년제 국고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1년마다 변동됩니다.
-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고액이 담보로 제공되는 본인명의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적용되며, 수신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적용금리도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 당좌대출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 산출하여 고시되는 당좌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되며, 매일 변동됩니다.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변동이자율인 경우 제조 거래 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되고 고정이자율인 경우 이자율변동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COF(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일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제조 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주기가마다 변동됩니다.
- U-보급자리론 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이자변동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매월 고시하는 해당 월 U-보급자리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조 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됩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제 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5 조 담보 · 보험

-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 시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주택(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포함합니다. 기타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의 준공 즉시 소유권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 등을 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즉시 제공합니다.
- 본인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은행을 위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화재보험 가입을 은행에 위임하며, 최초보험료는 대출실행금액에서 차감하고 보험기일 도래 시에는 자동이체에 의한 보험료 출금을 승인합니다.(최초 보부기간은 ()년, 이후 매 1년마다 갱신)

본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등(은행으로 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하는 주택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그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은행의 승인없이 소유권 이 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본인이 제3항에 따른 담보물 보전담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대출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로 인하여 은행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기간연장

- 약정한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은행의 연기정책에 따라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은행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
 - 연체여신 보유자
 - 감정가액 대비 과다여신 보유자
- 은행은 제항의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상환기일 1개월전까지 본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하며, 본인이 연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전화추적(별도 약정서 징구 생략) 또는 소정 양식에서 명달인 후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액 및 이율 등은 은행이 정한 연기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7 조 한도대출거래에 대한 약정

-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가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한도초과지급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약정에 의하여 대출실행계좌에 대해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 또는 현금 자동지급카드 등의 사용이 있는 때에는, 실행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실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은행이 그 결제를 확인한 때까지 이자금에서 제외)을,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이자, 지연배상금,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및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대출취급수수료, 인지세, 담보권의 설정비용, 담보조사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제반비용은 실행계좌에서 자동인출하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범위내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부족으로 인하여 더할 수 없는 금액은 즉시 갚기로 합니다.

제 8 조 가계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본 대출의 만기 도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기에 관한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 연장합니다.
-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 9 조 은행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

-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시 본인의 사정 등으로 담보제공이 지연될 경우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제항에 의한 비용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은 곧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은행의 지급일로부터 본인의 상환일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대출금 수령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 (부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대출금 수령위임의 표시

(단위: 원)

금 액	금 원
대출금수령 계좌번호	금 계좌번호:
	예 금 주: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제 12 조 분양권 전매시의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본인이 주택 등의 분양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서의 본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채권의양도

- 은행은 이 약정에 기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및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채권(주택저당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
- 본인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근저당권을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더 이상 활용 할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매매 · 상속 ·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채권양도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본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이 대출거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4 조 기타 담보권설정

-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를 인도하기로 합니다.
- 제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 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방정장려금 등을 포함합니다.
- 예금 등이 기간연장 · 개시 · 갱신 · 분할 · 병합 · 증액 · 감액 또는 이자환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도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칩니다.
- 은행은 제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위탁자) 수 익 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 기일

제 15 조 근저당권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및 은행의 승낙 절차

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에 신고후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 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다더라도 매도인의 기타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신용상태, 은행의 심사기준,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나 담보부동산 매매 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대출계약 철회

- 본인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하, "철회 기간"이라 합니다)까지 은행에 서명,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본인이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은행은 본인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제항에 따른 철회기간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증가, 연체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정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기타특약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	-----------

■ 대출금 입금, 자동이체 신청 및 무통장·무인감 출금 동의

본인은 아래에 기재된 계좌를 대출금 입금(한도거래의 경우 한도대출계좌) 및 상환(자동이체)계좌로 신청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대출실행일에 본인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관련 비용을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채무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금융기관명 : SC제일은행 • 계좌번호 : _____

■ 자동이체 거래약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1. 자동이체일(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청구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지정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 됩니다.
2.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에서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 합니다.
3. 납입일에 이체대상이 여러건이 있을 경우,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에 따릅니다.
 ※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확인경로: 은행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 예금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4. 자동이체계좌의 지급제한 등으로 출금이 불가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른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의 예금잔액이 이체일 현재 납입할 총액에 미달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7. 본인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래는 다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련예금약관, 신탁약관, 계좌간 자동이체거래약관을 준용 합니다.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1.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자율은 실행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3. 이 약정서 작성 후 주소, 전화번호, 기타 위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귀 은행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 하겠습니다.
4. 이 약정서의 접수가 대출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여부 결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5. 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7.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8.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인)